

-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 -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우형찬 의원 외 19명

나. 의안번호 : 제278호

다. 제출일자 : 2018. 12. 14.

라. 회부일자 : 2018. 12. 17.

### 2. 주 문

전국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임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과 사후 관리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반면 항공기 운항과 공항 운영에 따른 수익은 소음 발생 원인자들이 독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증편과 노선 확대, 군공항의 전투기 훈련 강화 등 오히려 항공기 소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서울특별시의회는 16개 광역의회와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의 기초의회에 ‘항공기 소음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을 제안하

며,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같은 목소리로 공동대응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3. 제안이유

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 정도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역에 따라 서로 달라 각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 항공기 소음 발생 원인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대책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나.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같은 목소리로 공동대응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5.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다. 지방의회

- 광역의회 :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기초의회

- ▶ 서울 : 양천구의회, 강서구의회, 구로구의회, 금천구의회
- ▶ 부산 : 강서구의회
- ▶ 대구 : 동구의회, 남구의회
- ▶ 인천 : 중구의회
- ▶ 광주 : 광산구의회
- ▶ 울산 : 북구의회
- ▶ 경기 : 수원시의회, 성남시의회, 평택시의회, 의정부시의회
- ▶ 강원 : 양양군의회, 횡성군의회, 강릉시의회
- ▶ 충북 : 청주시의회, 충주시의회
- ▶ 충남 : 서산시의회
- ▶ 전북 : 군산시의회, 전주시의회
- ▶ 전남 : 무안군의회, 여수시의회, 영암군의회
- ▶ 경북 : 포항시의회, 울진군의회, 예천군의회
- ▶ 경남 : 사천시의회, 창원시의회

## 6.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가. 개요

- 동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이하 “항공기 소음 특위”)<sup>1)</sup> 위원 20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우리 의회가 여타 16개 광역의회와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의 기초의회에 ‘항공기 소음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같은 목소리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공동대응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항공기 소음 특위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에 따른 서울시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 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코자 지난 제9대 의회 당시 처음 구성<sup>2)</sup>되어 3년 2개월 여간 운영되었으며, 현재 제10대 의회에서 구성된 항공기 소음 특위는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을 서울시 서남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는 서울시 모든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31개소<sup>3)</sup>에 이르는 공항이 산재해있고, 각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주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고

1)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18.11.16. 가결)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018.11.14. 가결)

2)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15.4.23. 가결)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018.4.23. 가결)

3) 인천국제공항공사 : 1개소(인천국제공항 / 공사홈페이지 <https://www.airport.kr/co/ko/index.do>)

한국공항공사 14개소(김포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원주공항, 국산공항, 포항공항, 울산공항, 광주공항, 사천공항, 여수공항 / 공사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군공항 16개소(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2018.10.31.) 자료집 중 ‘군공항이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있으나, 지역마다 소음피해 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 각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바,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방지대책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공항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항공기 소음 발생 원인자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관련 대책을 내놓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제도라는 지적과 논란이 지속되어왔음

※ 참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항공기 소음과 그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사회 전반에 알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 ▲전국 공항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파악 및 조사·연구가 항공기 소음 발생 원인자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마다의 특성을 반영하되 피해 지역 간 상대적인 박탈감을 방지

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과 실효성 있는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공기 소음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을 제안하고, 전국 지방의  
회가 연대하여 같은 목소리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공동대응 할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의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 할 것임